

2024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6억 6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5억 8천만원 대비 14.0%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9,919	579,919	661,197	481,278	81,278	267.5%	14.0%	
경상적외입 세수	기타이자수입	20,479	20,479	20,479	0	0	0%	0%
임시적외입 세수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59,440	159,440	159,440	0	0	0%	0%
	위약금	0	0	58,998	58,998	58,998	100%	100%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0	400,000	400,000	400,000	0	100%	0%
보수입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22,280	22,280	22,280	100%	1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목	구분	예산액				비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0	0	81,278	81,278	81,278	
위약금 (자치경찰지원과)		0	0	58,998	58,998	58,998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자치경찰총괄과)		0	0	21,011	21,011	21,01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자치경찰협력과)		0	0	1,269	1,269	1,269	

2.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71억 9백 만원으로 기정 예산 273억 1천 1백만원 대비 0.7%(2억2백만원) 감액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6,911,340	27,311,340	27,108,781	197,441	Δ202,559	0.7%	Δ0.7%	
행정 관리	소 계	26,911,340	26,911,340	26,708,781	Δ202,559	Δ202,559	Δ0.8%	Δ0.8%
	행정운영경비	287,098	287,098	287,098	0	0	0%	0%
	재무활동	0	0	35,421	35,421	35,421	100%	100%
	사 업 비	26,624,242	26,624,242	26,386,262	Δ237,980	Δ237,980	Δ0.9%	Δ0.9%
교 부 금	0	400,000	400,000	400,000	0	100%	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4 예산		2024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59,211	259,211	56,652	Δ202,559	Δ202,559	Δ78.1%	Δ78.1%
관광경찰대 운영 (전환사업) (자치경찰지원과)	259,211	259,211	21,231	Δ237,980	Δ237,980	Δ91.8%	Δ91.8%
국고보조금반환 (자치경찰총괄과)	0	0	29,477	29,477	29,477	100%	100%
국고보조금반환 (자치경찰협력과)	0	0	1,413	1,413	1,413	100%	100%
국고보조금반환 (자치경찰지원과)	0	0	4,531	4,531	4,531	100%	100%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위약금(5천9백만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2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 기정 예산(5억8천만원) 대비 14.0% 증액된 6억 6천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특별교부세’ 4억원은(2024. 1. 29.교부)은 간주처리 하였음.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함.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9,919	579,919	661,197	481,278	81,278	267.5%	14.0%	
경상적외입 세외입	기타이자수입	20,479	20,479	20,479	0	0	0%	0%
임시적외입 세외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59,440	159,440	159,440	0	0	0%	0%
	위약금	0	0	58,998	58,998	58,998	100%	100%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0	400,000	400,000	400,000	0	100%	0%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0	0	22,280	22,280	22,280	100%	100%

※ 간주처리 : 1건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간주처리 내역은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사업으로 4억원임(제1차 간주처리(2024.1.29.)).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입	총 계	0	81,278	81,278	
	위약금	0	58,998	58,998	○한강경찰대 순찰정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편성부서 : 자치경찰지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22,280	22,280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처리 ○편성부서 : 자치경찰총괄·협력과

- 먼저, '위약금'은 한강순찰대 순찰정 건조 납품기한('23.12.30.) 지연(납품 '24.3.13.)으로 지체상금(5천9백만원) 발생에 따른 것임.

〈 한강순찰대 순찰정 계약 현황 등 〉

- 계약현황

계약명	계약자	계약금액(원)	납품기한
한강순찰대 순찰정 구입	주식회사 로○○○○○○○○○○	996,600,000	'23.12.30.

- 지체상금 내역

납품일	지체일수(일)	지체상금(원)	비고
'24.3.13	74	58,998,720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0.080% (물품의 제조·구매)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5월 27일 별도 제출자료 참조.

- 다만, 올해도 한강순찰대 중형 순찰정 2정(예산 14억원)을 신규로 건조할 예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순찰정 건조 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등으로 납품기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 검사와 테스트를 통해 품질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기대를 충족하는 순찰정을 수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2천 2백만원을 추가경정세입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세입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금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에 대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액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임.

- 다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정확한 반납액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적정 금액을 당해 연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71억 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73억 1천 1백만원 대비 0.7% 감액하려는 것으로,
 -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사업의 감액(2억3천8백만원) 1건과 “국고보조금 반환” 증액(3천5백만원) 1건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6,911,340	27,311,340	27,108,781	197,441	Δ202,559	0.7%	Δ0.7%	
행정관리	소 계	26,911,340	26,911,340	26,708,781	Δ202,559	Δ202,559	Δ0.8%	Δ0.8%
	행정운영경비	287,098	287,098	287,098	0	0	0%	0%
	재무활동	0	0	35,421	35,421	35,421	100%	100%
	사업비	26,624,242	26,624,242	26,386,262	Δ237,980	Δ237,980	Δ0.9%	Δ0.9%
교 부 금	0	400,000	400,000	400,000	0	100%	0%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259,211	56,652	Δ202,559	
	관광경찰대 운영	259,211	21,231	Δ237,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전액 감액 ○ 사무관리비(151백만원→4백만원) ○ 공공운영비(106백만원→17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3백만원→0원) ○ 편성부서 : 자치경찰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0	35,421	35,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신규 편성 ○ 국고보조금 반환금(0원→35백만원) ○ 편성부서 : 자치경찰총괄협력지원과

가.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자 반납액을 세출예산에 미편성할 경우 ‘정산 후 최초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해야 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행정안전부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보조금 등 3천 5백 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먼저, 자치경찰총괄과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행정안전부)에서 2년간(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8억 9천 3백만원 중 97.6%(집행액 8억7천1백만원)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과 이자액 등 2천 9백만원을 반납하려는 것임.

〈 2023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국비 집행실적 및 반납액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A=B+C+D)	집행액 (B)	이월액(C)	당기집행 잔액(D)	이자액 (E)	반납총액 (F=D+E)	집행률 (A/B,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892,963	871,952	0	21,011	8,466	29,477	97.6%

- 다음으로, 자치경찰협력과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업(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과 자치경찰지원과의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기타 교통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은 2022년 자치경찰사무 예산 모두 정부(국고보조금)가 부담하여 2022회계연도에서 2023회계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6백만원을 국고로 반납하려는 것임.

※ 제2차 재정분권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예산은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21% → 25.3%)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2022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과목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㉔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㉕	다음연도 이월액㉖		집행잔액 ㉗-㉘-㉙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공공 운영비	30,000	0	0	20,000	0	0 (10,000 보조금 반납)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무 관리비	434,700	434,700	387,200	0	47,500	0 (400 보조금 반납)
기타 교통활동 지원		사무 관리비	391,376	390,531	345,031	0	45,500	0 (845 보조금 반납)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자산및 물품 취득비	1,221,000	1,134,129	813,251	0	320,878	0 (86,870 보조금 반납)

▶ 이월사유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차량구매 지연
-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 사업대상지 변경 및 자치구의 안전검사 선행에 따른 환경 조성 시기 지연
- 기타 교통활동 지원 : 음주측정기 가스용기 세트 조달구매 납품 시기 지연
-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 무인교통단속 장비 추가설치 시설공사 연도 내 완료 어려움

〈 명시 및 사고이월(2022회계연도→2023회계연도)된 국비 예산 집행 현황 등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행액	집행잔액(A)	발생이자(B)	반납총액 (A+B)	집행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20,000	18,731	1,269	143	1,412	93.6%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47,500	47,500	0	626	626	100%
기타 교통활동 지원	45,500	45,500	0	537	537	100%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320,878	320,878	0	3,367	3,367	100%
총 계	433,878	432,609	1,269	4,673	5,942	99.7%

-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2022년도에 ‘국비보조금(2천만원)’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차량구매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도 소액이지만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이라 함)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업단계별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불용 처리를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

- “관광경찰대 운영(전환사업)”은 관광지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안전한 치안 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관광경찰대’ 폐지에 따라 집행잔액 전액(2억3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경찰청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경찰대’ 폐지에 대한 감액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경찰청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광경찰대’ 폐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하겠음.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1,231	259,211	△237,980
사무관리비	4,415	150,632	△146,217
공공운영비	16,816	105,947	△89,131
자산및물품취득비	0	2,632	△2,632

○ **관광경찰대 개요 및 현황**

- (주요임무) 명동 등 주요 관광지 내 불법행위 단속, 순찰 등 치안활동 수행
 ※ 연혁 :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대통령 주재)시 논의('13.07) ➡ 관광경찰대 발족('13.10)
- (조직인력) 1대장(경정), 행정팀(4명)·순찰팀(3개팀, 54명) / 근무자 59명
- (시설현황) 총 13개소(본부 1개소, 거점시설 7개소, 개방형센터 5개소)

구 분		소재지	면적(평)	재산구분	건물구조
본 대	본 부	마포구 성산동	418	서울청	철골구조
거 점 (6개소)	인사동	종로구 안국동(안국역사 내)	12	서울시	역사내
	동대문	중구 광희동(동대문역사공원 내)	12	"	역사내
	남대문	중구 남대문로 남대문경찰서 내	20	서울청	철골구조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이태원역사 내)	12	서울시	역사내
	홍 대	마포구 서교동 서교치안센터2층	12	"	철골구조
	강 남	강남구 대치동 청담치안센터	10	서울청	"
개방형 센터 (5개소)	명 동('14년)	중구 명동	3.3	중 구	조립식건물
	이태원('15년)	용산구 이태원동	3.3	용산구	"
	홍 대('20년)	마포구 서교동	8	마포구	"
	동대문('15년)	중구 을지로6가	6.3	중 구	"
	종 로('23년)	종로구 계동	6.3	종로구	"

○ **최근 5년간 관광경찰대 센터별 신고 및 지원 현황**

* 단속, 불편처리 유형별 현황(※ 센터별 통계 현황 없음)

구 분	총 계	단 속						불편 처리
		소계	택시 ·콜밴	미신고 숙박업	상표법	호객 행위	기타*	
'19년	76,735	984	76	618	4	7	279	75,751
'20년	23,884	376	22	208			146	23,508
'21년	15,571	1,318	1	602			715	14,253
'22년	56,778	2,295	1	538	0	0	1,756	54,483
'23년 1~8월	19,963	1,534		582			952	18,429
총 계	192,931	6,507	100	2,548	4	7	3,848	186,424

* 경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04-206면 재인용.

※ 관광경찰대는 관련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4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있는 자치경찰사무임에도 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광경찰대를 폐지하였음.¹⁾

※ 자치경찰위원회는 관광경찰대는 ‘3천만 관광시대 서울 미래비전’(23.9월)에 부응하여 서울시 관광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등 관광경찰대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충분한 만큼 폐지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인력배치에 대하여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경찰청 조직개편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의견 경찰청에 제출, 23.10.27.).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u>관광경찰대 설치·운영</u>

※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권한 없는 경찰청이 폐지한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자치경찰권의 침해이며, 경찰청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자치경찰사무 담당조직을 변경·폐지하는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배제하여 자치경찰제도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였음.

※ 2023년 10월 일부개정·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12호, 일부개정 2023.10.17., 시행 2023.10.30.)는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1)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훈령 제373호, 2024.1.19.)에서 관광경찰대는 삭제되었고, 신설된 기동순찰대에 범죄우려지역, 관광지 등 주요 장소에서의 범죄 예방순찰 및 대응활동을 분장하고 있음.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였고, 서울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로 개편하였음.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정은 자치경찰제 실시 취지를 무색케 하였고, ‘자치경찰차장’ 폐지로 1개 조직(범죄예방대응부)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 조직이 혼재되어 구분이 불명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실무협의 및 임용권 행사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음.

- 아울러, 「경찰법」 제35조제1항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경찰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이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건의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서 “외국 관광객들의 바가지·강매 등 문제를 해결해오던 서울 관광경찰대가 올 초 폐지되면서 경찰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²⁾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관광지의 바가지·강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외국인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이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

2) 한국경제, “명동에 화장품 사러 갔다가 ‘날벼락’ ... “나라망신” 시끌”, 2024년 5월 21일자 참조.
(최종방문 2024년 6월 3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12630i>)